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신설〉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81)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64)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77)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81)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8
1. 농어촌유학 지원 특례 신설(윤준병의원안 제12조의2 신설)	8
2. 사·군구기본계획 수립시 주거·교통기반에 관한 사항 고려(조승환의원안 제6조제2항) ...	13
3. 국고보조금 지원 특례(조승환의원안 제14조의2 신설)	16
4. 아동복지시설의 확충 특례(윤호중의원안 제21조의2 신설)	18
5. 일학습병행 특례(윤준병의원안 제22조제12항 신설)	21
6.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특례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 면제 (한병도의원안 제27조의2 신설)	24
7. 빈집 철거 비용 지원(한병도의원안 제24조제2항 및 윤준병의원안 제24조제3항 신설) ·	29
8.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 목적 이전에 대한 지원(윤준병의원안 제24조)	33
9.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 신속 처리 등(윤준병의원안 제24조)	36
10.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윤준병의원안 제25조) ..	39
11.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의 특례(윤준병의원안 제25조의2 신설)	43
12. 폐교재산의 무상 양여(윤준병의원안 제27조의2 신설)	45
13. 인구감소지역 이전 초기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특례(윤준병의원안 제28조) ·	47

【조승환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3.
3. 회부연월일 : 2024.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거·교통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교통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한병도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4.
3. 회부연월일 : 2024.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노후화된 주택 및 빈집의 정비·활용 등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2023년 12월에 정부도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개수·보수뿐만 아니라 철거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을 해체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빈집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윤준병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0.
3. 회부연월일 : 2024.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촌유학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학구 조정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산업교육기관 등을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으로 우선하여 선정하며, 해당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2항 신설).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노후화된 빈집에 대하여 시장·군수 등이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에 대한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진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 라.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 마. 산림청장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

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내항여객선 및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의 선박을 이용하는 섬 주민 및 섬 주민 차량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고 도선장 설치가 긴급히 필요한 소외도서지역의 경우에는 도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선장에 적합한 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8항).

아.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차.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문화·체육시설 등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1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

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지원에 있어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초기 중견기업(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한함)을 포함함(안 제28조제2호).

【윤호중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호중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0.
3. 회부연월일 : 2024.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해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도 인구감소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농어촌유학 지원 특례 신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촌유학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학교 배정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윤준병의원안
<신설>	<u>제12조의2(농어촌유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면서 생태전환적 교육 및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상호 협력 문화를 배우는 활동(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유학”이라 한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u> <u>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④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유학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 배정에 있어 거주 지역 외의 학교로 배정할 수 있다.</u> <u>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농어촌유학 지원 및 학교 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u>

현행	윤준병의원안
	부 칙 제3조(농어촌유학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유학 지원 조직을 운영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을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농어촌유학지원센터로 본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¹⁾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일정기간 ‘인구감소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면서, 생태전환적 교육 및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상호 협력 문화를 배우는 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지역 학생에게는 농어촌의 생태환경과 농어촌학교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인 농어촌에는 학생 수 증가와 인구 유입을 통해 농어촌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활력 제고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

현재 농어촌유학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유학센터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어촌유학 지원사업

1)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을 추진해왔고,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시·도 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 유학센터형, 홈스테이형으로 구분하여 유학생 및 유학가족 단위로 유학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농어촌유학 유형]

유 형	내 용
농촌유학센터형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학생만 입소
홈스테이형	학교 근처 농가에서 운영하는 홈스테이 입소
가족체류형	학생 및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이주하여 주택에서 생활

※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별 농어촌유학생 현황]

(‘24년 1학기 기준)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명)
강원도	170	7	—	177
전라북도	127	6	—	133
전라남도	290	45	6	341
합계(명)	587	58	6	65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초등학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통학구역이 지정됨에 따라,²⁾ 도시지역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하는 경우, 학생은 유학운영학교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통학구역 내 거주해야 하며, 인접 면에서 거주할 경우 농촌유학이 안 되는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안 제12조의2제4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유학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 배정에 있어 거주 지역 외의 학교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을 확대하여 농촌유학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함.

농어촌유학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제1항에서 “농어촌유학”을 통해 배우는 활동에 ‘생태전환적 교육’을 예시로 들고 있으나,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³⁾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⁴⁾

개정안은 ‘생태전환교육’이 인구감소지역 학교에 한정하여 일정기간 수행되는 특정 교육활동으로 오인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교육기본법」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어촌유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족체류형 및 홈스테이형 농어촌유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 '23년도 농촌유학 지원실적(총 24개소)

지역		시 설 명	농촌유학 시작연도	지원 이력	유학생수 (초·중학생)	국비
계		총 24개 시설			260	750
울산	울주	소호산촌(농촌)유학센터	'05	'11~	16	39
경기	여주	밀머리농촌유학센터	'13	'15~	54	85
	가평	가평민들레농촌유학센터	'17	'18~	5	30
강원	춘천	춘천별빛농촌유학센터	'07	'13~	9	35
	원주	부론자연학교농촌유학센터	'17	'18~	5	30
	횡성	사재산농촌유학센터	'13	'14~	6	32
	영월	할아버지집 농촌유학센터	'22	'23~	4	10
충북	제천	희망숲산촌유학센터	'11	'16~	7	36.5
	단양	한드미농촌유학센터	'07	'10~	41	89.5
충남	공주	명덕재아이들농촌유학센터	'03	'15~	3	9
	논산	논산양지농촌유학센터	'02	'21~	11	36
전북	완주	열린마을농촌유학센터	'11	'14~	18	39
	완주	운주농촌유학센터	'20	'21~	7	32
	임실	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	'09	'12~	13	36
	장수	어울더울농촌유학센터	'19	'20~	2	9
	순창	엄마품자연품 농촌유학센터	'22	'23~	3	10
전남	강진	옴넛골산촌유학센터	'16	'18~	3	10
	순천	낙안산천농촌유학센터	'21	'22~	3	10
	영암	월인당농촌유학센터	'21	'22~	3	10
	화순	뽕모실 농촌유학센터	'21	'22~	11	33
경북	영주	하늘꽃마을농촌유학센터	'18	'19~	6	32
	예천	시골살이아이들농촌유학센터	'12	'12~	7	32
	봉화	청량산풍경원농촌유학센터	'14	'15~	21	55
경남	하동	바른몸밝은마음배움터농촌유학센터	'17	'19~	2	10

2. 시·군·구기본계획 수립시 주거·교통기반에 관한 사항 고려

개정안은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①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②노후·유희시설의 정비·활용, ③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조승환의원안 제6조제2항).

현행	조승환의원안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생략)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군·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8. 제24조에 따른 주거·교통 등의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u><신설></u>	9. 제27조에 따른 노후·유희시설의 정비·활용에 관한 사항
<u><신설></u>	10. 제2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8.·9. (생략)	11.·12.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시·군·구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군·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군·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시·군·구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4. 시·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방안
5.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8. 시·군·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군·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군·구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⁵⁾

개정안은 시·군·구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에 주거·교통 등의 기반 확충, 노후·유희시설의 정비·활용,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군·구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르면 주거·교통 기반 확충, 노후·유흥시설 정비·활용 등 외에도 보육·교육·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을 확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군·구기본계획 수립 시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군·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및 “3. 시·군·구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 분야를 열거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필요한 분야의 기반 확충 사업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국고보조금 지원 특례

개정안은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보조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조승환의원안 제14조의2 신설).

현 행	조승환의원안
<신 설>	제14조의2(국고보조금의 지원)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상보조율**은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⁶⁾, 개정안은 보조금법령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을 인상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시행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이며,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국가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유사 입법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4. 아동복지시설의 확충 특례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윤호중의원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윤호중의원안
<신설>	제21조의2(아동복지시설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각종 아동복지시설이 설치하여 운영 중임.⁷⁾

7)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 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인구감소지역법」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⁸⁾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우선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아동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이미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62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시설 종류		목적	개소수	비용보조
생활 시설	아동 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 제공	241	지방이양 (지방비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 일시보호 및 양육대책수립	17	
	아동보호치료시설	소년법 제32조제6호 처분 또는 치료 필요아동 보호·치료	12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15	
	공동생활가정 (아동그룹홈)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자립 지원	520	인건비, 운영비 지원 (국비40%, 지방비60%).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치료·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 가정 복귀 지원	125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신규설치비 지원 (국비40%, 지방비60%).
이용 시설	아동상담소	아동 및 가족문제 관련 상담·치료·예방· 연구	10	지방이양 (지방비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아동전용시설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각종 편의 제공을 통해 신심건강 및 복지증진 서비스 제공	7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4,288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 지원 (국비 서울 30%, 지방 50%)
기 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받은 아동의 상담·치료, 사례관리 를 통해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 학대 예방	85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설치비 지원 (국비50%, 지방비50%).
	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가정에서 보호 하는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및 운영 지원	18	지방이양 (지방비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보장원	아동정책 수립 지원 및 아동보호서비 스의 체계적·종합적인 수행 및 지원	1	국비 지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17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국비 서울 50%, 지방 80%)

※ 자료: 보건복지부

5. 일학습병행 특례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산업교육기관 등을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22조제12항 신설).

현행	윤준병의원안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 ⑪ (생략) <u><신설></u>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대학 등을 <u>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u>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을 말한다)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으로 <u>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u> 이 경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u>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u>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현행	윤준병의원안
⑫ (생략)	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산업교육기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준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 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대학 등을 ‘외국인 일학습병행 운영기관’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기관에 대한 추가적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숙련된 정주 외국인력의 양성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⁹⁾ 산업맞춤형 직업훈련인 “일학습병행제”¹⁰⁾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지원하려는 것임.

9) * 외국인 유학생(D-2) 수(법무부) : ('18) 103천명 → ('20) 102천명 → ('22) 134천명 → ('24.5) 162천명
* 졸업 후 취업 계획 비율(법무부·통계청, %) : ('17) 24.0 → ('20) 32.7 → ('23)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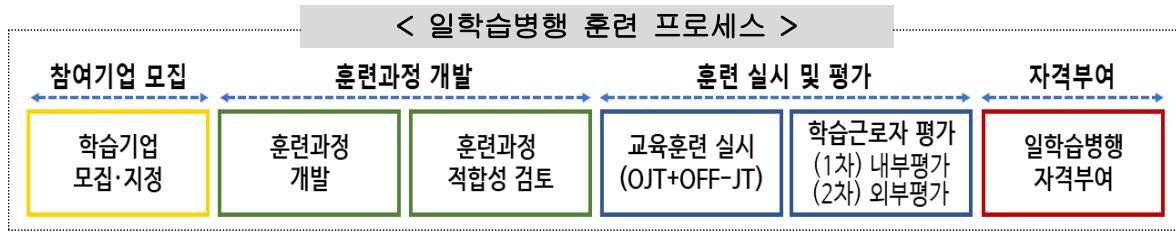
10)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학습병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을 모두 제공하고, 해당 근로자는 교육훈련의 평가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가.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의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이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라 한다)

나. 해당 기업의 근로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직업능력개발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이하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하고 있음.

6.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특례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 면제

개정안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어촌 빈집 해체 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한병도의원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한병도의원안
<신설>	<u>제27조의2(농어촌 빈집 활용 등에 대한 특례) 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숙박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u> <u>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 <u>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숙박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u> <u>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u> <u>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u> <u>2.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u>3.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u> <u>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u>

현	행	한병도의원안
		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바목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같은 항 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방공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빈집을 해체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체계획서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제27조의2제1항,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특례)

전국 빈집은 2022년말 기준 13만 2천호로 전체 주택(18,812천호)의 0.7% 수준이며, 이 중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이 6만 1천호로, 전체 빈집의 46.8%를 차지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빈집 및 인구현황 >

구분	전국(A)	인구감소지역(B)	비율(B/A)
빈집(호)	132,052	61,838	46.8%
인구(명)	51,439,083	4,840,438	9.4%

※ 자료 : 2022년말 기준, 농림수산물부 전국 빈집 현황 조사결과

특히, 인구감소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 주민 안전, 위생·악취, 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을 통해 관광인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¹¹⁾

1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¹²⁾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을 통해 별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의 예외로 농어촌 민박,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인정하고 있음.¹³⁾

다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한 별도 기준 등은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관련 하위법령 개정 시 ‘빈집 활용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이라는 내용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안 제27조의2제5항, 해체계획서 제출 면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으려거나 해체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농어촌 빈집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작고 단층임에도, 철거 시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의 검토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¹⁴⁾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빈집을 해체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출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비용·절차를 제거하여 농어촌 지역의 빈집 정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14)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⑥ ~ ⑨ (생략)

다만, 농어촌 빈집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계획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를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생략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38호), 윤준병의원(의안번호 제2203738호)]이 발의되어 심사 중이므로, 이에 대한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빈집 철거 비용 지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노후화된 빈집의 철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한병도의원안 제24조제2항 및 윤준병의원안 제24조제3항 신설).

현 행	한병도의원안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 <u>보수</u>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보수·철거</u> ----- -----.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윤준병의원안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노후화된 빈집에 대하여 시장·군수 등이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에 대한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진하여 철거

현행	윤준병의원안
	<u>하는 경우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부 칙 제2조(빈집 철거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거하는 빈집부터 적용한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 중이나,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30년 이상 단독주택이 전체의 52.8%로 조사된 바 있으며,¹⁵⁾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되지 않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철거 비용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주택 개선을 위한 신축, 개·보수 및 철거 비용은 「농어촌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규정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15)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주택]

○ (노후기간) 20년 이상 된 주택은 총 주택의 50.2%, 30년 이상 된 주택은 21.1%

- 단독주택의 52.8%(204만호), 아파트의 11.3%(136만호)는 노후기간이 30년 이상 된 주택

법」에도 철거 비용 지원을 추가하여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¹⁶⁾ 및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¹⁷⁾에서는 노후화된 빈집을 시장·군수 등이 철거한 경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보상비를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윤준병의원안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노후화된 빈집에 대하여 시장·군수 등이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에 대한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에 대해서만 철거비를 제외하지 않고 보상비를 지급한다면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고,

빈집 정비 의무는 1차적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있으며,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가 개입하고 있는데, 안전·위생상 유해 우려로 철거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가 명령 불이행시 시장·군수등이 빈집을 철거하면서 그 비용까지 부담한다면,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빈집

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④ 시장·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17)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주택]

○ (노후기간) 20년 이상 된 주택은 총 주택의 50.2%, 30년 이상 된 주택은 21.1%

- 단독주택의 52.8%(204만호), 아파트의 11.3%(136만호)는 노후기간이 30년 이상 된 주택

을 방치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노후화된 빈집에 대하여 빈집 소유자가 자진하여 철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철거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을 추진 중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 사업 개요

- (사업연도/예산) 2024년 / 50억원
- (추진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지자체 조례
- (사업내용) 빈집 철거·활용, 철거 후 부지 공공 활용(꽃밭, 공용주차장 등)
- (지자체 선정) 지자체 신청을 받아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우선 지원
- (추진방식)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
 - 행안부: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및 평가
 - 지자체: 소유자 동의서 확보, 수요조사 및 응모, 시행자 선정·지도·감독

※ 자료: 행정안전부

8.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 목적 이전에 대한 지원

개정안은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윤준병의원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윤준병의원안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u>매각</u> 할 수 있다.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④ ----- ----- ----- ----- -----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⑤ 산림청장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산
<신설>	

현행	윤준병의원안
④ (생략)	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신고 절차 및 기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안 제24조제4항, 공유지 사용의 특례)

「인구감소지역법」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에게는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지 매입 후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거주지 이전 결정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¹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건물 등 공유재산을 저렴한 임대료로 대부하여 거주지를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이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귀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안 제24조제5항, 임업용산지에 주택건축 허용)

우리나라 산지 중 준보전산지는 누구나 주택건축이 가능하지만,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경우 농림어업인 등에 한해 주택(660㎡ 미만) 건축이 가능한데,¹⁹⁾

원격근무 활성화·은퇴 후 귀촌 등으로 자연환경이 탁월한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수요는 많으나 농림어업인 외에는 주택을 설치할 수 없어 이주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한해 임업용 산지에도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4.7.18.)’ 중 하나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입법을 준비 중임.

19)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 4) (생략)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 15) (생략)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9.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 신속 처리 등

개정안은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고 도선장 설치가 긴급히 필요한 소외도서 지역에는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윤준병의원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윤준병의원안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에 따른 <u>내항여객선</u> 을 이용하는 섬 주민 및 섬 주민 차량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신설></u>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⑦ ----- ----- ----- ----- <u>내항여객선 및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을</u> -----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u>유선 및 도선 사업법</u> 」 제4조에도 불구하고 <u>인구감소지역인 도서(島嶼)로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고 해당 도서에 도선장 설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도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u>

(안 제24조제7항)

현행법은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 및 섬 주민의 차량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 선적이 불가능한 쾌속선만 운항 중인 항로의 경우 화물선에 차량을 선적할 수 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는 상황임.

개정안은 차량 운임 지원을 화물선까지 확대하여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여객 운임	12,078	12,045	12,090	10,881	10,881
차량 운임	2,517	2,550	2,550	2,295	2,295
합계	14,595	14,595	14,640	13,176	13,176

※ 자료 : 해양수산부

(안 제24조제8항 신설)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도선장에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²⁰⁾ 이

2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로 인해 소외도서에서 신속하게 신규항로를 개설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고 해당 도서에 도선장 설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 등은 추후 갖추 수 있도록 도선장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임.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설기준 등) 유·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0.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현행	윤준병의원안
제25조(문화기반의 확충) 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5조(문화기반의 확충) ① ----- ----- ----- ----- ----- . 이 경우 <u>「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록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u>
② ~ ④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u>인구감소지역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u>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안 제25조제1항,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단독주택에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²¹⁾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인구감소

21)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지역에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의 등록요건²²⁾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등록요건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입법 취지는 타당함.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4.7.18.)’ 중 하나로 인구감소지역의 작은도서관의 경우 기준 보유량(1,000권)의 1/2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완화를 추진 중임.

[작은도서관 현황]

도서관 수	공립(1,587)		사립(5,288)				
	지자체직영	민간위탁	개인·단체	새마을문고	종교시설	법인	아파트
6,875	1,044	543	1,437	300	1,110	284	2,157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22)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2. 시설 요건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도서관자료 요건

나.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안 제25조제5항,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제5호)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그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요건(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²³⁾

구분	주요내용
객실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기타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참고]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현황(2023년말 지자체 제출 자료 기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업체	248	1	8	1	1	20	78	8	16	5	12	16	17	65
객실	49,897	334	1,960	184	55	3,430	21,163	2,125	2,892	637	1,659	3,302	2,805	9,351

※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등록업체 없음.

23)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⑤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안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현실에 맞게 소규모지만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이 설립되도록 인구감소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어,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콘도시설을 공급하여 관광인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4.7.18.)’ 중 하나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객실기준을 최소 30실 이상에서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하였음.²⁴⁾

24)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11.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의 특례

현행	윤준병의원안
<신설>	제25조의2(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내에 의료기관 및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등 의료·문화·체육시설 등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용도지역에서의 건축행위와 관련한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에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등 기반시설의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참고] 유사 입법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u>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u>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②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u>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폐율·용적률은 기반시설 용량, 경관·환경 등을 감안한 도시밀도 주요 관리수단으로, 그 완화 특례의 적용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로 명확히 규정 필요가 있으며,²⁵⁾

건폐율·용적률은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용도지역의 지정 취지에 따라 그 적정 수준이 정해지므로,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군·구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12. 폐교재산의 무상 양여

현행	윤준병의원안
<신설>	제27조의2(폐교재산의 무상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폐교재산을 같은 법 제2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로 직접 활용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²⁶⁾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2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전국 미활용 폐교 367개 중 인구감소지역에만 243개(66.2%)가 있으며, 해당 폐교 개발을 통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인구감소지역에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는 긍정적임.

참고로,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⁷⁾

2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⑤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13. 인구감소지역 이전 초기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특례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윤준병 의원안 제28조제2호).

현행	윤준병의원안
제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u>중소기업</u> 에 임대하는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2. ----- ----- ----- <u>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연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한정한다)</u>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임대료의 감면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연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장의 신설·증설 등 지역 내 투자 유도 및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각종 지원이 축소되어 투자 확대 및 지속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연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까지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의 신설·증설 등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입법 취지는 타당함.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2024.7.18.)하였으며,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초기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36